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. 8. 26 선고 2020가단121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

소송대리인 C

피고D

변론 종결2020. 7. 15.

판결 선고2020. 8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4,078,910원 및 이에 대한 2020. 4. 18.부터 2020. 8. 26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원고, '채무자'는 피고로 본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3. 일부 기각 부분

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(민법 제387조 제2항)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.

판사백지예

별지